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청 관련 국문요약서 면제 알림 협조 요청

1.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 신청 관련입니다.
2.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청 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출자료의 일부(국문요약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오니, 본국 담당기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19.1.1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농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에 별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었습니다.
 - 나. 이와 관련하여 IT 신청 시 CODEX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제네릭 농약은 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국문요약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한국 대상 수출농산물 생산자 및 관련 기관 등에게 상기 내용을 알려 IT 신청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IT 신청시 국문요약서 면제 알림(비공식 영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주한미국대사, 주한캐나다대사, 주한멕시코대사, 주한아르헨티나대사, 주한칠레대사, 주한브라질대사, 주한에콰도르대사, 주한파나마대사, 주한우루과이대사, 주한파라과이대사, 주한콜롬비아대사, 주한페루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주한스페인대사, 주한스위스대사, 주한터키대사, 주한오스트리아대사, 주한프랑스대사, 주한이탈리아대사, 주한영국대사, 주한폴란드대사, 주한헝가리대사, 주한우크라이나대사, 주한덴마크대사, 주한체코대사, 주한벨기에대사, 주한스웨덴대사, 주한노르웨이대사, 주한핀란드대사, 주한중국대사, 주한베트남대사, 주한태국대사, 주한일본대사, 주한필리핀대사, 주한인도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뉴질랜드대사,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주한코스타리카대사, 주한불가리아대사, 주한루마니아대사, 주한슬로바키아대사, 주한포르투갈대사, 주한라트비아대사, 주한아일랜드대사, 주한네덜란드대사, 주한독일대사, 주한말레이시아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주한그리스대사, 주한러시아대사, 주한카자흐스탄대사, 주한이스라엘대사, 주한몽골대사, 주한파키스탄대사, 주한싱가포르대사,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주한이란대사,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주한콩고대사, 주한오만대사, 주한온두라스대사, 주한앙골라대사,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주한가봉대사, 주한조지아대사, 주한피지대사, 주한코트디부아르대사, 주한튀니지대사, 주한세네갈대사, 주한볼리비아대사, 주한이집트대사, 주한카타르대사, 주한시에라리온대사, 주한리비아대사,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 주한세르비아대사, 주한잠비아대사, 주한아프가니스탄대사, 주한수단대사, 주한르완다대사, 주한케냐대사,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주한알제리대사, 주한방글라데시대사, 주한라오스대사, 주한브루나이대사, 주한엘살바도르대사, 주한스리랑카대사, 주한이라크대사, 주한미얀마대사,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주한동티모르대사, 주한파푸아뉴기니대사, 주한캄보디아대사, 주한니카라과대사, 주한타지키스탄대사, 주한요르단대사, 주한모로코대사, 주한쿠웨이트대사, 주한과테말라대사, 주한베네수엘라대사, 주한레바논대사, 주한나이지리아대사, 주한네팔대사, 주한가나대사, 주한벨라루스대사, 주한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명예영사, 주한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한룩셈부르크대표부, 주한대만대표부

연구관 윤소미 국제협력담당관 전결 2020. 4. 2.
관 공수진

협조자

시행 국제협력담당관-3128 (2020.04.0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처 본부동 403호 국제협력담당관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1569 팩스번호 043-719-1550 / smyun@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